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99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안도걸·강준현·김문수

양부남 • 조인철 • 전진숙

정진욱 • 신정훈 • 박지원

주철현 · 김교흥 · 권향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본문 중 "다목부터 마목"을 "라목부터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4호다목"을 "제4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4호나목"을 "제4호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을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으로 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주류

-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다. 제3호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고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라.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 마.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주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	제8조(세율) ①		
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주류	4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u>다목</u>	가 <u>라목</u>		
<u>부터 마목</u> 까지의 주류: 10	<u>부터 바목</u>		
0분의 72. 다만, 별표 <u>제4</u>	<u>제4</u>		
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	호라목		
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u>제4호나목</u> 의 주류:	나 <u>제4호나목 및 다목</u> -		
100분의 3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